

의안번호	제 78 호
의 결 연 월 일	2018년 월 일 (제 회)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8년 10월 31일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78
----------	----

제출연월일 : 2018. 10. 3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① 재산의 취득

(단위: m², 천원)

기관명	사업명	구분	수량	금액
충청북도교육청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사업비 증액)	건물	0	1,107,035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967	2,279,474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건물	967	2,403,768
합 계		3건	1,934	5,790,277

3. 201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별첨

4. 관계법령: 별첨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득 시기	취 득 사 유	취득 소유자	비고
기관명	소재지	구분	수량					
개 신 초등학교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637	건물	0	1,107,035	2020. 상반기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교육감	도면1
청주외국어 고등학교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4	건물	967	2,279,474	2020. 상반기	다목적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2
충주예성 여자중학교	충주시 호암동 532-2	건물	967	2,403,768	2019. 하반기	다목적교실 증축	교육감	도면3
계			1,934	5,790,277				

1]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① 사업위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637

② 주요내용

◦ 변경사유

- 학교 부지내 주차장이(현재 28대) 협소하고 다목적 교실 증축 시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당초에는 1층 규모의 다목적교실을 증축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1층은 주차장(필로티), 2층은 다목적교실로 변경 증축하고자 함
- 사업비가 당초대비 1,107,035천원 증가하여(약 47%) 변경 계획 제출

◦ 사업용도: 주차장 및 다목적교실

◦ 사업기간: 2018. 12. ~ 2020. 5.

◦ 소요예산(총사업비): 3,444,432천원(당초 2,337,397천원, 증 1,107,035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m², 천원)

구분	면적	예 산 액		
		2018년	2019년	계
당초	967	99,600	2,237,797	2,337,397
변경	967	99,600	3,344,832	3,444,432
증감			1,107,035	1,107,035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교부금	일반회계(시청)	자체	소계	
건물	당초	2,337,397	1,364,000	0	468,000	505,397	973,397
	변경	3,444,432	1,364,000	0	468,000	1,612,432	2,080,432
	증감	1,107,035	0	0	0	1,107,035	1,107,035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사비	다목적교실	m ²	967	1,802	1,742,534	
	기초보강파일	개소	107	596	63,772	
	무대장치, 커튼	식	1	52,107	52,107	
	방송설비	식	1	44,929	44,929	
	냉난방	식	1	50,479	50,479	
	필로티	m ²	934	606	566,004	
	계단실	실	1	116,018	116,018	
	승강기	식	1	146,782	146,782	
	연결복도	m ²	45	1,431	64,395	
	창호설치	실	2.5	21,734	54,335	
	포장	m ²	1,314	97	127,458	
	배수로	m	150	250	37,500	
	성토	m ³	271	20	5,420	
	조경석쌓기	m ²	77	431	33,187	
	급수관	m	100	187	18,700	
	오수관	m	100	187	18,700	
	전기간선인입	m	110	250	27,500	
	인조잔디철거 및 마사토	m ²	1,140	67	76,380	
	소계					3,246,200
	용역비	감리비	식	1	35,400	35,400
설계비		식	1	141,600	141,600	
설계공모제작비용		식	1	9,912	9,912	
시설부대비		식	1	11,320	11,320	
소계						198,232
합계					3,444,432	

- 사업규모
 - 건물 1동, 967㎡(1층 필로티, 2층 다목적교실)
 - 주요(부대)시설: 다목적교실, 방송설비, 냉난방, 필로티, 포장, 배수로 등
- 기준가격 명세: 건물 3,444,432천원(당초 2,337,397천원보다 47%이상 증액)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②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① 사업위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444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업용도: 다목적교실
- 사업기간: 2018. 12. ~ 2020. 5.
- 소요예산(총사업비): 2,279,474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계
예산액	2,279,474	0	2,279,474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교부금	일반회계(시청)	자체	소계	
건물	2,279,474	1,320,000	0	684,000	275,474	959,474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사	다목적교실	㎡	967	1,802	1,742,534
	기초파일	개소	97	596	57,812

비	무대장치, 커튼	식	1	52,107	52,107
	방송설비	식	1	44,929	44,929
	냉난방	식	1	50,479	50,479
	포장	m ²	500	97	48,500
	배수로	m	130	250	32,500
	비막이통로	m	20	880	17,600
	급수관	m	200	187	37,400
	오수관	m	50	187	9,350
	전기간선인입	m	200	200	40,000
	수목제거 및 기타	식	1	20,000	20,000
	소 계				2,153,211
용역비	감리비	식	1	24,400	24,400
	설계비	식	1	97,600	97,600
	시설부대비	식	1	4,263	4,263
	소 계				126,263
합 계					2,279,474

◦ 사업규모

- 건물 1동, 967m²

- 주요(부대)시설: 다목적교실, 방송설비, 냉난방, 포장, 배수로 등

◦ 기준가격 명세: 건물 2,279,474천원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③ 충주예성여자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① 사업위치: 충주시 호암동 532-2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활용

◦ 사업용도: 다목적교실

◦ 사업기간: 2018. 12. ~ 2019. 12.

◦ 소요예산(총사업비): 2,403,768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계
예산액	2,403,768	0	2,403,768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교부금	일반회계(시청)	자체	소계	
건물	2,403,768	1,257,750	0	625,993	520,025	1,146,018	

- 세부내역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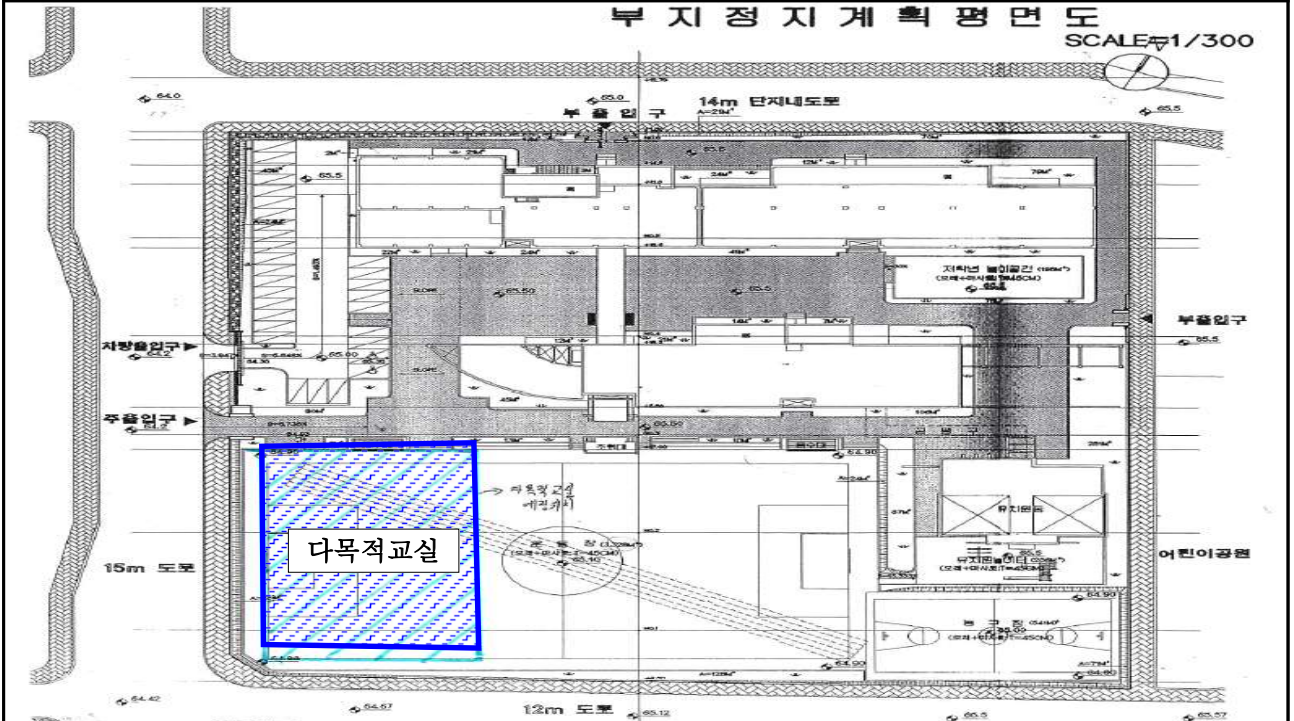
구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공사비	다목적교실	m ²	967	1,802	1,742,534
	배수로	m	300	250	75,000
	오수관	m	100	250	25,000
	포장	m ²	1,000	58	58,000
	무대장치, 커튼	식	1	52,107	52,107
	방송설비	식	1	44,929	44,929
	냉난방	식	1	50,479	50,479
	전기간선인입	m	500	200	100,000
	급수관인입	m	100	187	18,700
	기초파일	개소	100	596	59,600
	비막이통로	m	50	880	44,000
	소계				
용역비	감리비	식	1	25,500	25,500
	설계비	식	1	102,200	102,200
	시설부대비	식	1	5,719	5,719
	소계				
합계					2,403,768

- 사업규모
 - 건물 1동, 967m²
 - 주요(부대)시설: 다목적교실, 방송설비, 냉난방, 포장, 배수로 등
- 기준가격 명세: 건물 2,403,768천원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도면 1. 개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위치도

(단위: m²,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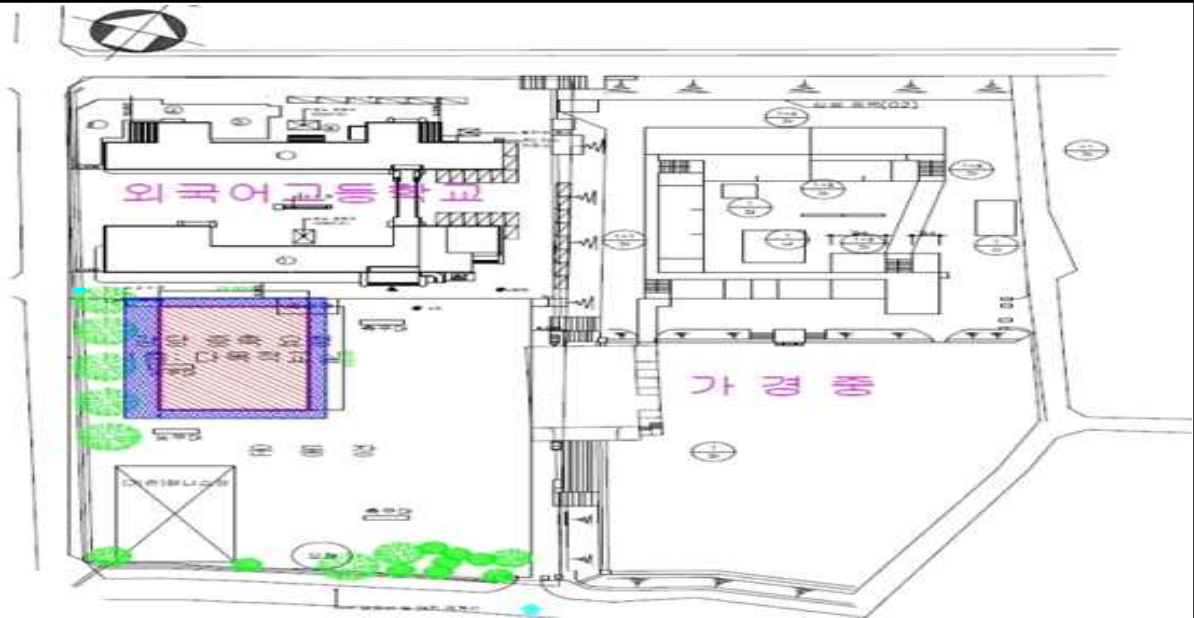
건명	소재지	지번	구분	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업비 증가액)	사유
개신초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637	건물	철콘조	967.00	3,444,432 (1,107,035)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 다목적교실 변경 증축



도면 2. 청주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위치도

(단위: m², 천원)

건명	소재지	지번	구분	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유
청주외고 다목적교실 증축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2444	건물	철콘조	967	2,279,474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



도면 3. 충주예성여중 다목적교실 증축 위치도

(단위: m², 천원)

건명	소재지	지번	구분	구조	수량	추정금액	사유
충주예성여중 다목적교실 증축	충주시 호암동	532-2	건물	철근조	967	2,403,768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 활용



관계법령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0., 2017.7.26.>

⑥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8.31.>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2012.5.11>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